

#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존속기한)의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기금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당초 :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변경 :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나.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정비(안 제4조)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직 위원 구성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 3. 조 례 안 : 붙임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새마을남·여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를 “구미시 새마을 남·여지도자”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을 설치”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단체”를 “구미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2. 구미시새마을회장
3. 정책기획실장
4. 새마을운동 유공 서훈 지도자

제4조제4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정 할”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립 하여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새마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출납 폐쇄”를 “출납폐쇄”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새마을지도자”를 “구미시 새마을 남·여 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0이내”를 “50 이내”로 한다.

제15조 중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7%”를 “기준 새마을지도자의 7퍼센트”로 한다.

제16조 후단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 중 “구미시협의회장·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이하 “새마을단체장”이라)”를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이하 “새마을단체장”이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금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를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로, “각호 중에서”를 “선정된 자 중에서 같은 순위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순)”을 “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9조 단서 중 “년액”을 “연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회

장은 제1항에 규정된”을 “구미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중 “이바지 하여야”를 “이바지하여야”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미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u></p> <p style="text-align: center;"><u>설치및운용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미市新마을남·여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지도자" 라 한다)</u>의 자녀 및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양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이하 "<u>기금</u>"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재원) <u>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u>자치단체</u> 출연금</li> <li>2. 3. (생략)</li> </ol>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u>의하여</u> 운용하고, 구미시 금고에 이자율이</p> | <p style="text-align: center;"><u>구미시 새마을지도자</u></p> <p style="text-align: center;"><u>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u>구미시</u><br/><u>새마을 남·여지도자</u>-----<br/>-----<br/>-----<br/>-----<br/>-----<br/>- <u>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u><br/><u>을 설치</u>-----<br/>-----<br/>-----<br/>-----.</p> <p>제2조(기금의 재원) <u>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하 "</u><u>기금</u><u>"이라 한다)</u>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구미시</u> -----</li> <li>2. 3. (현행과 같음)</li> </ol>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br/>----- <u>따라</u> -----<br/>-----</p> |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② (생략)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새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목적 외-----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  
-- "위원회"라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마을운동구미시지회장, 정책기  
획실장이되며, 위촉직 위원은  
새마을운동 유공 서훈지도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  
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을담당이 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  
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2. 구미시새마을회장

3. 정책기획실장

4. 새마을운동 유공 서훈 지도  
자

④ -----  
----- 각 1명-----  
-----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인  
정할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 위원 중 -----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  
-.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

-----  
- 수립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른 -----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

-----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안전행정국장

2. (생략)

② (생략)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

1. ----- 새마을과장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  
출납폐쇄 -----  
-----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

② -----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새마을운동에 연속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학학년 현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3. (생략)

제1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전년도말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한다.

제1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  
----- 구미시 새마을 남·여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  
-----50 이내-----

2. 3. (현행과 같음)

제15조(장학생의 정원) -----  
----- 기준 새마을지도자의 7퍼센트 -----.

제16조(장학금액) -----  
-----  
----- 범위-----

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청 및 추천) 장학금은 구미시협의회장·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이하 "새마을단체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지도자가 시장에게 신청한다

제18조(선정기준) ① 장학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기금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정하게 한다.

②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각호 중에서 경합이 되면 우등생, 특기생 순으로 한다

1. ~ 3. (생략)

4. 최근 3년 이내 새마을 유공표창(시 단위 이상 기관장)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의 순)

5. 기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고등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생

-----  
-----.

제17조(신청 및 추천) -----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이하 "새마을단체장"이라 -----  
-----

제18조(선정기준) ① -----  
----- 위원회-----  
-----.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  
-----  
----- 선정된 자 중에서 같은 순위로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순

5. 그 밖에 -----  
-----  
-----

③ -----  
-----

을 포함시킬 경우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 한다.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 4. (생략)

5. 기타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2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향

----- 위원회-----  
-----.

④ ----- 1명  
-----  
-----  
-----  
-----.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  
-----  
-----.  
----- 연액-----  
-----.

제20조(지급정지) ① -----  
----- 각 호의 어  
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② 구미시새마을회장은 제1항  
에 따른 -----  
-----  
-----.

제21조(장학생의 의무) -----  
-----  
-----

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  
바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이  
바지하여야 ----.

제22조(시행규칙) -----  
-- 필요-----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 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 소관 실·과      |       | 새 마을 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박 수 원               |
|             | 담 당   | 박 경 하               |
|             | 담 당 자 | 이 미 경<br>(480-6802) |